

제 60회 변리사 시험 대비

지인 디자인보호법 목차집

(2차 기본서)

이준권

j i i n DESIGN LAW

jiin DESIGN LAW

디자인보호법 일반

CHAPTER

01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1)

2)

3)

(3) 검토

디자인보호법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

(1) 디자인을 보호

1) 실체적 보호:

2) 절차적 보호:

3) 특유디자인제도에 의한 보호

(2) 디자인을 이용

1) 특징:

2) 디자인권자의 이용:

3) 제3자의 이용:

(3) 디자인 창작의 장려

(4) 산업발전에 이바지

디자인의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

(1) 디자인의 유행성

(2) 유행성과 관련된 규정

i)

ii)

iii)

iv)

v)

vi)

vii)

(3) 유행성과 관련된 특유제도

i)

ii)

iii)

iv)

v)

vi)

jin DESIGN LAW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CHAPTER

02

1. 의의 및 취지

2. 물품성의 요건

(1) 독립성

1) 원칙

①

②

2) 예외

①

②

③

(2) 유체성

1) 원칙

2) 예외

①

②

(3) 구체성

1) 원칙

2) 예외

(4) 동산성

1) 원칙

①

② 判例는,

2) 예외

3. 흡결 시 취급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취급

(1)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 ① (원칙)
- ② (예외) i) ii) iii) iv)
- ③ (불가분성의 발현) i) ii) iii) iv) v)

(2) 물품의 특정성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의 기재(제37조 제1항, 제2항)

(4) 물품의 종류

- ①
- ②

(5) 물품의 동일·유사 판단

물품성이 문제 되는 경우

(1) 자연물의 보호

- ① (문제점)
- ② (견해의 대립) i) ii)
- ③ (검토)

(2)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 ① (정의)
- ② (법상 물품인지)
- ③ (출원 전략)
- ④ (보호 논의)

(3) 서비스 디자인의 보호 - 물품성, 형태성, 공업성, 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

1. 의의 및 취지

2. 형태성의 내용

(1) 형상

- ① (의의)
- ② (종류)
- ③ (필수요소)
- ④ (기타)

(2) 모양

- ① (의의)
- ② (종류)
- ③ (임의요소)
- ④ (기타)

(3) 색채

- ① (의의)
- ② (종류)
- ③ (임의적 구성요소)
- ④ (기타)

(4)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3. 흡결 시 취급

디자인보호법상 형태의 취급

(1) 형태의 동일·유사 판단

- ① (일반)
- ② (모양)
- ③ (색채)

(2) 도면

(3)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4) 물품명의 기재(제40조 제2항)

(5) 형태의 보정(제48조)

형태성이 문제 되는 디자인

- i)
- ii)
- iii)
- iv)
- v)
- vi)

04

시각성

1. 의의 및 취지

2. 시각성의 내용

(1) 시각으로 파악될 것

- ①
- ②

(2) 육안으로 식별될 것

- ①
- ② (예외)

(3) 외부에서 보일 것

- ①
- ② (예외)
- ③ (예외)

3. 흡결 시 취급

물품의 소형화 추세

(1) 종래 견해의 대립

(2) 검토 및 심사기준

- i)
- ii) 한편,

1. 의의 및 취지

2.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 의미

- (1) 견해의 대립
- (2) 심사기준의 태도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3. 디자인의 본질과 심미성의 관계

- (1) 견해의 대립
- (2) 판례의 태도
- (3)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태도
- (4) 검토

4. 심미성의 판단

- ①
- ② 심사기준은,
- ③ 判例는,

5. 흠결 시 취급



jin DESIGN LAW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CHAPTER

03



부분디자인

1. 의의 및 취지

2. 성립요건

(1) 부분디자인의 대상

- ①
- ②

(2) 성립요건

- ①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일 것
- ② 물품의 부분인 경우 / 회상의 부분인 경우
- ③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

(3) 흡결 시 취급

3. 유사 판단 방법

- 1)
- 2)

4.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2)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 ①
- ②

(3) 창작성(제33조 제2항)

(4) 확대된 선출원주의(제33조 제3항)

- 1) 선출원디자인 특정
- 2) 판단 방법

- (5) 부등록사유(제34조)
- (6)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 1) 판단 방법
 - 2) 1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① 형태적 일체성 인정 :
 - ② 기능적 일체성 인정 :
- (7)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 (8) 관련디자인(제35조), 선출원주의(제46조)

5. 디자인권

-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2) 이용관계(제95조)
- (3) 디자인권 확보 방안

출원 시 주의사항

check

- (1) 출원서(제37조 제1항)
- (2) 도면(제37조 제2항)

등록을 위한 조치

check

- (1)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제36조)
- (2) 보정(제48조)
 - 1) 부분디자인에 있어서 요지변경이란,
 - 2)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의 출원 형식을 변경하는 보정은,
- (3) 분할출원(제50조)

전체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i) 원칙적으로, ii) 다만,
- (4) 조약우선권주장(제51조)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된 디자인이 전체디자인에 관한 출원인데 우리나라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 i) 원칙적으로,
 - ii) 다만,

1. 의의 및 취지

2. 성립요건

(1) 성립요건

- 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②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③ 한 벌의 글자꼴일 것

(2) 흡결 시 취급

3. 유사 판단 방법

(1) 심사기준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3) 동적 글자체 디자인

- ① 동적 글자체와 정적 글자체의 경우,
- ② 동적 글자체 상호간에는,

4.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2)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관련디자인(제35조), 선출원주의(제46조)

(3) 확대된 선출원주의(제33조 제3항)

(4)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5)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5. 디자인권

-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2) 디자인권의 효력제한(제94조 제2항)

출원 시 주의사항

check

- (1) 출원서(제37조 제1항)
- (2) 도면(제37조 제2항)

등록을 위한 조치

check

- (1) 보정(제48조)
 - ①
 - ② (요지변경인 경우)
 - ③ (요지변경 아닌 경우)
- (2) 분할출원(제50조)

1. 의의 및 취지

2. 성립요건

- (1) 물품성
- (2)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i)
 - ii)
- (3) 흡결 시 취급

3. 유사 판단 방법

- (1) 물품간 유사여부 판단
-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1)
 - 2)
 - 3)

4. 등록요건

-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1) 공업적 생산방법
 - 2)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
- (2)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관련디자인(제35조), 선출원주의(제46조)
- (3)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 ①
 - ②
- (4)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 ①
 - ② 심사기준에 따르면,
- (5)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5. 디자인권

공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예시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 ①
- ②
- ③
- ④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디자인

- ①
- ②
- ③

용이창작의 유형

- ①
- ②
- ③

1. 의의 및 논의의 실익

- (1) 의의
- (2) 논의의 실익

2. 부품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 (1) 성립요건
- (2)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3. 등록요건 판단 시 관계

- (1)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 i)
 - ii)
- (2)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 i)
 - ii)
 - iii)
- (3)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 i)
 - ii) 다만,
- (4) 확대된 선출원주의(제33조 제3항)
 - i)
 - ii) 다만,
- (5) 관련디자인(제35조), 선출원주의(제46조)
 - i)
 - ii) 다만,

4. 등록을 위한 조치에 있어서 관계

- (1)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제36조)
- (2) 보정(제48조)
- (3) 분할출원(제50조)
- (4) 조약우선권주장(제51조)

5. 등록 이후의 관계

-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2) 완성품디자인 등록 후 부품의 실시
 - 1)
 - 2)
- (3) 부품디자인 등록 후 완성품의 실시
 - 1)
 - 2)
- (4) 디자인권 확보 방안

완성된 형태가 단일/다양한 조립완구

- (1) 합성물 정의
- (2) 유사 판단
 - 1)
 - 2)
- (3) 도면 관련 구체성 흠결
 - i)
 - ii)
- (4) 등록 가능성
 - 1) 물품성
 - 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구분		물품성	디자인 1출원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구성각편		
	조립된 상태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	구성각편		
	조립된 상태		

(1) 문제의 소재

(2) 권리범위 측면

- 1) 문제점
- 2) 완성품에 대해 등록받는 방법
- 3) 부품을 완성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는 방법
- 4) 부품에 대해 전체디자인으로 등록받는 방법

(3) 등록 및 무효가능성 측면

- 1) 문제점
- 2) 등록 및 무효가능성 측면
- 3) 소결

(4) 후출원 배제효 측면

- ①
- ②

10

형상만의 디자인

1. 의의 및 취지

2. 형상 내부에 대한 해석

- (1) 견해의 대립
- (2) 검토

3. 유사 판단 방법

- (1)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
- (2)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색채를 부가한 디자인

4. 등록요건

- (1)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선출원주의(제46조)
- (2) 확대된 선출원주의(제33조 제3항)
- (3) 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5. 디자인권

-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2) 이용관계 성립여부(제95조)
 - 1) 문제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출원 시 주의사항 및 등록을 위한 조치

check

- (1) (출원 시 주의사항)
- (2) (등록을 위한 조치)

11

동적디자인

1. 의의 및 취지

2. 성립요건

(1) 성립요건

- ① 물품의 기능에 의해 형태가 변할 것
- ②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될 것
- ③ 변화 후 상태가 용이하게 예측될 수 없을 것
- ④ 변화에 일정성이 있을 것

(2) 흡결 시 취급

3. 유사 판단 방법

- (1)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간 유사 판단
- (2)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 유사 판단

4. 등록요건

-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2)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 (3)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 (4) 확대된 선출원주의(제33조 제3항)
- (5)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5. 디자인권

-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2) 이용관계(제95조)

출원 시 주의사항

check

- (1) 출원서(제37조 제1항)
- (2) 도면(제37조 제2항)

등록을 위한 조치

check

- (1) 보정(제48조)
- (2) 분할출원(제50조)

12

화상디자인

1.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 (1)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
- (2)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 (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2. 화상디자인 의의 및 취지

- (1) 의의
- (2) 취지

3. 성립요건

- (1)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일 것
 - ①
 - ②
 - ③
- (2) 흡결 시 취급

4. 유사판단

- ①
- ②
- ③

5. 등록요건

-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디자인을 양산할 수 있을 것
 - 2)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될 것
 - 3) 디자인의 표현에 구체성이 있을 것

(2)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3)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 기본적인 판단 방법

①

②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도면 등에 둘 이상의 화상이 표현된 경우

①

②

3)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

①

②

4) 변화하는 동적 화상디자인의 경우

①

②

(4) 물품류(제40조 제2항)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제40조 제2항)

①

②

③ (인정 예시)

④ (불인정 예시)

6. 디자인권

구체적인 유사 판단 방법

(1) 화상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

(2) 변화하지 않는 “화상디자인”과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 상호간의 유사여부 판단

(1) 출원서(제37조 제1항)

1) 화상디자인의 용도

①

②

2) 화상의 부분디자인

3)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2) 조약우선권주장(제51조)

①

②

③

1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1. 의의 및 취지

2. 성립요건

(1)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성립요건

(2) 물품성

- ①
- ② (흡결 유형)

(3) 시각성

- ①
- ② (예외)

3. 유사판단

(1)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 ①
- ②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4. 등록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①
- ②
- ③ (동적 화면디자인)
- ④ (동적 화면디자인)

(2)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3)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 ①
- ②

(4)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제40조 제2항)

- ① (물품류)
- ② (물품의 명칭)
- ③ (흡결의 유형)

(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51조)

- ① (물품의 동일성)
- ② (디자인의 동일성)

5. 디자인권

구체적인 유사 판단 방법

- (1) 유사범위의 폭 설정 방법
- (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간의 유사판단
- (3) 정적화면디자인과 동적화면디자인의 유사판단
- (4) 동적화면디자인 간의 유사판단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동적화면디자인

- (1) 의의
- (2)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3) 유사판단
- (4)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4

일부심사등록

1. 의의 및 취지

2. 출원절차

3. 등록요건

(1)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등록요건

①

②

③ 다만,

4. 등록을 위한 조치

5. 디자인권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68조)

(3)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정(제116조 제2항)

1. 의의 및 취지

2. 캐릭터 자체의 등록 가능성

- (1) 성립요건 만족 여부(제2조 제1호)
- (2)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3.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

- (1) 디자인으로 성립(제2조 제1호)
- (2)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3)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선출원주의(제46조)
- (4)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 ① (주지의 형상·모양)
 - ② (상업적·기능적 변형)
 - ③ (공지디자인과 주지형태의 결합)
- (5) 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4.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터의 보호 방안

- (1) 물품의 형상 또는 모양으로 보호
- (2) 전사지의 모양으로 보호
- (3) 특유디자인으로 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5. 등록 이후의 법적취급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2) 저작권과의 이용·저촉(제95조 제3항)

- ① (원칙)
- ② (예외)

저작권법과 중첩적 보호

- ①
- ②

캐릭터를 공지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부

- ①
- ②

16

문자의 취급

1. 문자의 법적취급

(1) 문자의 의의

(2) 물품에 표현된 문자의 취급

1) 종래 심사기준의 태도

- ① 원칙적으로,
- ② 다만,
- ③ 예외적으로,

2) 현행 심사기준의 태도

- ①
- ②

2. 등록요건 판단 시 취급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①
- ② 다만,

(2) 유사 판단 방법

(3)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 ①
- ② 判例는,

(4) 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내지 제3호)

- ①
- ②

3. 등록 후 취급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2) 이용 · 저촉 관계(제95조)

17

색채의 취급

1. 색채의 의의

2. 출원절차 시 취급

3. 등록요건 판단 시 취급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①
- ②

(2) 유사판단

- ①
- ② 判例는,

(3)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4) 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5)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4. 등록을 위한 조치에 있어서 취급

5. 등록 후 취급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2) 이용관계(제95조)



jiin DESIGN LAW

디자인의 등록요건

CHAPTER

04

1. 의의 및 취지

2. 흠결의 유형

3.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양산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

(1) 요건

- 1)
- 2)
- 3)

(2) 흠결의 유형

- 1)
- 2)
- 3)
- 4)

4.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

(1) 요건

(2) 흠결의 유형

5.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합치되지 않은 경우

6. 법적 취급

(1) 흠결 시 취급

(2) 보정 거부

구체성 흠결의 유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19

신규성

1. 의의 및 취지

2. 판단 기준

- ①
- ②
- ③

3. 판단 방법

4. 신규성 상실 사유

- (1)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2)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 (4)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5. 흡결 시 취급

- (1)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20

창작비용이성

1. 의의 및 취지

2. 판단 기준

- ①
- ②
- ③

3. 판단 방법

4. 용이 창작의 유형

(1) 공지 등이 된 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

- ①
- ② 다만,

(2) 국내외 주지형태에 의한 용이창작

- ① 주지형태란,
- ② 주지형태에 의한 용이 창작 유형은,

(3) 공지디자인과 주지형태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

判例에 따르면,

5. 흡결 시 취급

(1)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심사관의 증거 제시 필요 여부

- (1) 용이창작에 대한 증거 제시
- (2) 혼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대한 증거 제시

21

선출원주의

1. 의의 및 취지

2. 판단 기준

- ①
- ②
- ③

3. 판단 방법

4. 선출원주의의 내용

(1) 선출원의 지위

- ① 원칙적으로,
- ② 다만,

(2) 동일인간 선출원주의 적용 여부

- ①
- ②

(3)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제46조 제1항)

- ① 타인간 출원의 경우,
- ② 동일인간 출원의 경우,

(4)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제46조 제2항)

- ① 타인간 출원의 경우,
- ② 동일인간 출원의 경우,

5. 흡결 시 취급

(1)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3)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제56조)

선출원주의 규정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

(1) 심사보류통지 및 거절이유 통지

- 1) 선출원 디자인의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 2) 선출원 디자인의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1. 의의 및 취지

2. 판단 기준

- ①
- ②
- ③

3. 판단 방법

- ①
- ②

4. 선출원디자인의 특징

- ①
- ②

5. 흡결 시 취급

- (1)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2. 등록요건

(1) 등록요건의 판단

- ① (판단시점)
- ② (판단방법)
- ③ (판단방법)

(2) 심사 등록요건(제35조)

- ① (주체적 요건)
- ② (객체적 요건)
- ③ (시기적 요건)
- ④ 또한,

(3) 일부심사 등록요건(제62조 제3항)

- ①
- ② 또한,

(4) 흡결 시 취급

- 1)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3. 디자인권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2) 디자인권의 종속성

-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제91조)
- 2) 디자인권의 이전 제한(제96조)
- 3)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설정 제한(제97조)

(3) 디자인권의 독립성

-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2)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출원 시 주의사항

check

- (1) 출원서(제37조 제1항)
- (2) 물품명칭
- (3) 출원의 종속성 및 독립성
 - ① (종속성)
 - ② (독립성)
- (4) 심사보류

등록을 위한 조치

check

- (1)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제36조)
- (2) 보정(제48조)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1디자인의 의미

(2) 1물품의 판단

① (심사기준)

② (判例)

(3) 1형태의 판단

3. 유형

(1) 제40조 제1항 위반의 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2) 제40조 제1항 인정의 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4. 흡결 시 취급

5. 등록을 위한 조치

1. 의의 및 취지

2. 내용

(1) 물품류 기재 방법

(2) 물품의 명칭 기재 방법

3. 흡결의 유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4. 흡결 시 취급

5. 등록을 위한 조치

- ①
- ②

1. 의의 및 취지

2. 성립요건

(1) 성립요건

- ① 100개 이내의 디자인일 것
- ②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할 것
- ③ 물품류가 동일할 것

(2) 흡결 시 취급

3. 등록요건

(1) 등록요건 판단 방법

(2) 등록 여부의 결정

- ①
- ②

4. 디자인권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2) 디자인권의 성질

출원 시 주의사항

check

(1) 출원서(제37조 제1항)

(2) 도면(제37조 제2항)

①

②

(3) 출원일의 인정(제38조)

①

②

등록을 위한 조치

check

(1) 보정(제48조)

(2) 분할출원(제50조)

①

②

③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신청 및 청구

1. 의의 및 취지

2. 성립요건

(1) 성립요건

- ① 2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될 것
- ②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 ③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한 벌 물품에 해당할 것
- ④ 구성 물품이 적합할 것

(2) 흡결 시 취급

3. 등록요건

- (1) 등록요건 판단 방법
- (2)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3)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 (4) 창작비용이성(제33조 제2항)
- (5) 확대된 선출원주의(제33조 제3항)
- (6) 부등록사유(제34조)
- (7)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 (8)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 (9) 관련디자인(제35조), 선출원주의(제46조)

4. 디자인권

- (1) 디자인권의 효력(제92조)
- (2) 한 벌 물품디자인 등록 후 구성물품의 실시
 - 1) 원칙적으로,
 - 2) 한편,
- (3) 구성물품 등록 후 한 벌 물품디자인의 실시
 - 1) 원칙적으로,
 - 2) 한편,

출원 시 주의사항

check

- (1) 출원서(제37조 제1항)
 - 1) 물품류 기재 방법
 - 2) 물품의 명칭 기재 방법
- (2) 도면(제37조 제2항)

등록을 위한 조치

check

-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제36조)
- (2) 보정(제48조) 및 분할출원(제50조)
- (4) 조약우선권주장(제51조)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1. 의의 및 취지

2. 적용요건

- ① (의미)
- ② (자신)
- ③ (타인)
- ④ (변화)
- ⑤ (국가의 명칭)

3. 판단대상

4. 판단시기

5. 흡결 시 취급

29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 의의 및 취지

2. 적용요건

3. 판단대상

4. 판단시기

5. 흠결 시 취급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 의의 및 취지

2. 적용요건

(1) 내용

- ① (타인)
- ② (업무)
- ③ (물품)
- ④ (혼동)

(2) 유형

(3) 판례의 태도

3. 판단대상

4. 판단시기

5. 흡결 시 취급

1. 의의 및 취지

2. 적용요건

(1) 물품의 기능

(2) 불가결한 형상

1) 필연적 형상

- ① (의미)
- ② (판단)

2) 준필연적 형상

- ① (의미)
- ② (유형)

(3) 만으로 된 디자인

3. 판단대상

4. 판단시기

5. 흠결 시 취급

■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판단대상/시점

유형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판단 대상	일반D	전체, 일부 (1부분, 1부품, 1구성 물품)			전체
	부분D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외의 부분' 포함			-
	도면	참고도면 포함			-
판단 시점		등록여부결정 시	등록여부결정 시	출원 시	등록여부결정 시

jiin DESIGN LAW

디자인의 동일·유사

CHAPTER

05

1.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전제

2. 물품의 유사판단

- (1) 판례의 태도
- (2) 심사기준의 태도

3. 형태의 유사판단 - 일반적 판단기준

- (1) 판례의 태도
- (2) 심사기준의 태도

4. 형태의 유사판단 - 구체적 판단기준(判例)

- (1) 요부관찰의 법리
- (2) 공지 부분을 포함한 경우
 - 1) 등록요건 판단 시
 - 2) 권리범위 판단 시
- (3) 기본적·기능적 형태를 포함한 경우
 - ① (判例)
 - ② (검토)
- (4)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을 포함한 경우
- (5)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한 형상을 포함한 경우

5. 형태의 유사판단 - 그 밖의 판단기준

(1) 형태의 동일·유사

- ①
- ②

(2) 물품의 속성에 따른 판단

(3) 디자인 유사성의 폭 설정 방법

- ① 유사성의 폭이 넓은 경우 :
- ② 유사성의 폭이 좁은 경우 :

(4) 거래 시의 심미감을 고려하여 판단

(5) 대비 방향을 고려하여 판단

(6) 형태의 변화 참작

유사판단과 관련된 일반론

(1) 유사판단 의의 및 취지

(2) 판단기준

- ① (주체적)
- ② (객체적)

(3) 유사판단에 관한 견해

- 1) 견해의 대립
- 2) 판례의 태도
- 3) 검토



jiin DESIGN LAW

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CHAPTER

06

1. 서설

2. 출원서 기재 사항(제37조 제1항 각호)

3. 흠결 시 취급(제38조)

- (1) 출원일 불인정 사유(제38조 제1항)
- (2) 보완 명령 및 절차보완서의 제출(제38조 제2항, 제3항)
- (3) 출원일의 인정(제38조 제4항)
- (4) 출원서류의 반려(제38조 제5항)

디자인등록 출원의 효과 및 소멸

- (1) 디자인등록 출원의 효과
 - 1) 실체상의 효과
 - 2) 절차상의 효과
- (2) 출원 효과의 소멸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 (1) 의의 및 취지
- (2) 의사에 의한 경우 - 출원 계속 취하서/포기서 제출
 - 1)
 - 2)
- (3)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 등록료 미납(제82조 제3항)
- (4) 효과

1. 의의 및 취지

2. 도면의 역할

3. 도면의 기재사항

- (1) 도면의 기재사항(제37조 제2항 각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3) 디자인의 설명
 - (4) 창작내용의 요점
-

4. 도면의 작성방법

- (1) 일반적인 디자인의 작성방법
 - (2) 특유디자인의 작성방법
-

5. 흡결 시 취급

- (1) 출원일 불인정 사유(제38조)
 - (2) 출원서류의 반려(시행규칙 제24조)
 - (3) 절차의 무효(제18조)
 - (4) 등록요건의 흡결
 - 1)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본문)
 - 2) 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 3) 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

구체적인 도면 작성 방법

- (1) 조립완구
- (2) 움직이거나 열리는 디자인
-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1) 주체적 요건
- (2) 객체적 요건
- (3) 시기적 요건

3. 절차

(1) 신규성 상실 예외의 취지 주장

- ① (주장 시기)
- ② (작성 방법)

(2) 증명서류 제출

- ① (제출 시기)
- ② (작성 방법)

4. 효과

(1) 적법한 경우

(2) 부적법한 경우

- ①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②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불인정에 따른 효과,

복수의 공지 행위

- (1)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취지
- (2) 복수의 공지 행위
- (3)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 사례

- (1) 서로 유사한 디자인 A 와 디자인 A"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보정서 등을 통하여 디자인 A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한 경우, 공지디자인에 A와 A"에 대한 신규성 판단방법
-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A에 대하여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하였으나,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시에는 공지디자인 A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신규성 판단방법
- (3) 창작자가 창작한 디자인을 인터넷 상에서 2019.1.17. 공지한 후, 미국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2020.1.3.) 하였고, 미국의 출원 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 주장하여 2020.4.29.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인터넷상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판단기준일에 대한 검토
- (4)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를 먼저 공지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①
- ②
- ③

3. 절차

- ① (우선권주장)
- ② (증명서류 제출)
- ③ (번역문 제출)

4. 효과

(1) 우선권 주장 인정의 효과

- ① (파리조약상 효과)
- ② (국내법상 효과)

(2) 우선권 주장 불인정 절차

- ①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② 증명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1국 출원과의 동일성 판단

- (1) 동일성 판단의 일반원칙
- (2) 물품의 동일성 판단방법
 - i)
 - ii)
- (3)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방법
 - 1)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 2)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
 - 4)

우선권주장의 보정

- 1) 우선권주장의 보정은,
- 2) (시기)

우선권주장 출원의 요지변경 판단

- (1) 문제점
- (2) 판례의 태도
- (3) 검토

분할출원 시 우선권주장 생략

- (1) 문제점
- (2) 개정법의 태도
- (3)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생략(제50조 제4항 및 제5항)
 - ① (제50조 제4항 전단)
 - ② (제50조 제4항 후단)
 - ③ (제50조 제5항)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①
- ②
- ③

3. 절차

4. 효과

- i) (보정이 적법한 경우)
- ii) (요지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
- iii)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 iv)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보정서)

보정의 대상 및 보정각하 결정

- (1) 보정의 대상(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2) 보정각하 결정(제49조)
 - 1) 보정 각하 결정(제49조 제1항)
 - 2) 등록 여부 결정 유보 및 심사의 중지(제49조 제2항, 제3항)
 -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19조)

직권 보정 - 제66조

- (1) 의의 및 취지(제66조 제1항)
- (2) 절차 및 효과(제66조 제2항 내지 제5항)
 - ① (절차)
 - ② (의견서 제출 시 효과)
- (3) 심사기준의 태도
 - 1)
 - 2)

1. 의의 및 취지

2. 판단 방법

①

②

3. 심사기준 예시

(1)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①
- ②
- ③

3. 절차

4. 효과

(1) 분할출원의 효과

- ①
- ②

(2) 분할출원 불인정

- i)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ii)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iii) (기간을 도과한 분할출원)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1) 주체적 요건
- (2) 객체적 요건
 - ① (원칙)
 - ② (예외)
- (3) 시기적 요건

3. 절차

- (1) 출원공개 신청
- (2) 신청의 취하
- (3) 공개 방식

4. 효과

- 1) 경고할 권리(제53조 제1항)
- 2)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제53조 제2항 내지 제6항)
- 3)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제33조 제3항)
- 4) 우선심사의 대상(제61조 제1항 제1호)
- 5) 신규성 또는 창작성 판단의 인용 디자인(제33조 제1항 제2호)
- 6)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제206조)
- 7) 비밀디자인의 경우 철회 간주(제43조 제6항)

제56조에 의한 공개

- i)
- ii)
- iii) 다만,

보상금청구권 (제53조 제2항 내지 제6항)

- (1) 의의 및 취지
- (2) 요건
- (3) 대상
- (4) 행사
- (5) 소멸
- (6) 준용 규정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①
- ②
- ③

3. 절차

- i) (비밀디자인 청구)
- ii) (비밀기간의 기재)
- iii) (출원공개 신청)

4. 효과

- (1)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 비공개
- (2) 인용디자인이 비밀디자인인 경우
 - 1)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 2) 확대된 선출원주의 판단 시
 - 3) 선출원주의 판단 시
- (3) 예외적 열람청구
- (4) 이의신청기간의 실질적 연장
- (5) 과실 추정의 배제
- (6)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행사
- (7) 비밀누설죄
- (8) 비밀의 해제

비밀디자인 청구대상

- 1) (심사 또는 일부심사)
- 2) (복수디자인)
- 3) (관련디자인)
-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비밀디자인 청구의 장·단점

- (1) 장점
 - i) ~ iv)
- (2) 단점
 - i) ~ iii)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①
- ②
- ③
- ④

3. 효과

(1)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심사

- i)
- ii)

(2)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 i)
- ii)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및 절차

(1) 요건 (제66조의2 제1항)

- ①
- ②
- ③

(2) 절차 (제66조의2 제2항)

3. 효과

- ①
- ②
- ③
- ④

44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①
- ②
- ③

3. 절차

- (1) 이의신청서 및 증거 제출(제68조 제2항)
- (2) 이의신청서 부분 송달 및 통지(제68조 제3항, 제4항)
- (3)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69조)
- (4) 이의신청의 취하(제75조)

4. 심사

- (1) 심사의 주체(제70조)
- (2) 방식심사 및 적법성 심사
- (3) 본안심사(제71조, 제72조)
 - ① (직권심사)
 - ② (병합 또는 분리)

5. 결정

- (1) 결정의 주체 · 시기 · 방식
- (2) 각하결정
- (3)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
- (4) 불복가부

6. 효과

- (1) 이의신청기각결정의 효과
-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효과



jiin DESIGN LAW

디자인권 및 실시권

CHAPTER

07

1. 의의·취지 및 법적성질

- ① (의의·취지)
- ② (법적성질)

2. 발생

3. 효력

4. 변동

(1) 이전

- ① (출원 전 이전)
- ② (출원 후 이전)

(2) 제한

- ① (이전의 제한)
- ② (질권 설정의 제한)
- ③ (공유에 의한 제한)

5. 소멸

- ①
- ②
- ③

1. 디자인권의 의미

2.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1) 객체적 범위

- 1) (디자인권의 효력)
-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2) 시간적 범위

- 1)
- 2) (관련디자인), (정당권리자)

(3) 지역적 범위

3. 디자인권의 효력 내용

(1) 적극적 효력

- 1) (의미)
- 2) (업으로서의 의미)
- 3) (실시의 의미)

(2) 소극적 효력

- 1) (의미)
- 2) (내용)

4. 디자인권 효력의 확장 및 제한

(1) 디자인권 효력의 확장 - 간접침해(제114조)

(2) 디자인권 효력의 제한

1) 적극적 효력의 제한

- ① 전용실시권 설정에 의한 제한(제92조 단서)
- ② 이용·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제95조)
- ③ 디자인권 공유에 의한 제한(제96조)
- ④ 디자인권 포기의 제한(제106조)

2) 소극적 효력의 제한

- ① 실시권 설정에 의한 제한
- ②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제94조)
- ③ 등록료 추가납부로 회복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제84조 제4항)
- ④ 재심에 의해 회복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제161조)
- ⑤ 질권자와의 특약에 의한 제한(제108조)
- ⑥ 권리소진에 의한 제한
- ⑦ 판례가 인정하는 항변에 의한 제한

5. 디자인권의 소멸

(1) 디자인권 소멸의 원인

- 1) 존속기간의 만료(제91조 제1항)
- 2) 등록료의 불납(제82조 제3항)
- 3) 상속인의 부존재(제111조)
- 4)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제111조 제2항)
- 5) 디자인권의 포기(제105조)
- 6) 디자인권의 무효(제121조 제3항)
- 7) 디자인권의 취소(제73조 제4항)

(2) 디자인권 소멸의 효과

- 1) 디자인권 및 부수적 권리의 소멸
- 2) 법정실시권의 발생(제102조, 제103조)
- 3) 등록료의 반환(제87조)
- 4) 정당권리자의 출원(제45조)
- 5)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제53조 제6항)
- 6) 기타

특유디자인의 효력제한

- (1) 관련 디자인
- (2) 비밀 디자인
- (3) 한 벌 물품디자인
- (4) 일부심사등록디자인 - 과실의 추정(제116조 제2항)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1) 보호범위 의미
- (2) 판단 기준
- (3) 판단 방법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 (1) 디자인권의 이전
 - 1) 이전의 태양
 - 2) 이전의 제한
 - 3) 절차
 - 4) 효과
- (2) 디자인권의 공유
 - 1) 공유 디자인권의 태양
 - 2) 공유 디자인권의 제한
 - 3) 공유 디자인권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권 및 법정실시권

- (1) 디자인권 공유의 법적 성질 (判例)
- (2)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거부 (判例)
- (3) 법정실시권의 발생 (제110조)
 - 1) 의의
 - 2) 요건
 - 3) 효과

1. 디자인권 침해의 의미

2. 디자인권 침해의 특수성

3. 디자인권 침해의 요건

(1) 직접침해

(2) 간접침해

- 1) 의의 및 취지
- 2) 성립요건
- 3) 직접침해와의 관계

4. 권리자의 조치

(1) 선행적 조치

- 1) 경고장 발송
-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3) 증거보전 신청 및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2) 민사적 조치

- 1)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제113조)
- 2) 손해배상청구권(民法 제750조)
- 3) 신용회복청구권(제117조)
-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民法 제741조)

(3) 형사적 조치

- 1) 침해죄(제220조)
- 2) 양벌 규정(제227조)
- 3) 몰수 규정(제228조)

5. 실시자의 조치

(1) 경고장 분석 및 서류열람 신청

(2)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 1) 답변서 송부 -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 송부
-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
 - ① 비유사하다는 주장
 - ② 정당 권원이 존재한다는 주장 - 실시권 등
 - ③ 업으로서의 실사가 아니라는 주장
 - ④ 디자인권 효력제한 사유(제94조) 주장
 - ⑤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判例)
 - ⑥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제122조)
- 3) 등록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 ① 무효심판(제121조) 또는 이의신청(제68조) 청구
 - ② 무효의 항변(判例), 권리남용의 항변(判例)

(3)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 ① 실시행위의 중지
- ② 디자인권의 양수, 실시권의 설정
- ③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제123조)
- ④ 화해·중재·조정

6. 비침해 항변(判例)

(1) 무효의 항변

- ① (공지디자인을 포함하는 디자인)
- ② (용이창작 가능한 디자인)

(2) 권리남용의 항변

- ①
- ②

(3)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심사단계에서의 조치

(1) 권리자의 조치

- ① 보상금청구권 일반론
- ② 보상금청구권 발생을 위한 조치
- ③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조치
- ④ 디자인등록 후 권리행사

(2) 실시자의 조치

- ① 경고장 분석
- ②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i) ~ v)
- ③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i) ~ iii)

방어적 제도

- (1) 관련디자인(제35조)
- (2) 비밀디자인(제43조)
- (3) 출원공개(제52조)
- (4) 디자인등록의 표시(제214조)

1. 이용관계

- (1) 의의 및 취지
- (2) 이용의 개념에 관한 견해의 대립
 - 1) 견해의 대립
 - 2) 판례의 태도
 - 3) 검토
- (3) 성립요건

2. 저촉관계

- (1) 의의 및 취지
- (2) 성립요건

3. 법적 취급

- (1) 후원권리자의 법적 취급
 - 1) 효력의 제한
 - 2) 후원권리자의 실시 방안
- (2) 선원권리자의 법적 취급
 - 1) 적극적 효력의 제한
 - 2) 선원권리자의 실시 방안 - 크로스라이센스

이용관계의 태양

(1) 디자인 상호 간의 이용

- ① 부품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
- ②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 ③ 구성물품디자인과 한 별 물품의 디자인
- ④ 형상만의 디자인과 결합 디자인
- ⑤ 정적디자인과 동적디자인

(2) 타 권리 간의 이용

저촉관계의 태양

(1) 디자인권 상호 간의 저촉

(2) 타 권리 간의 저촉

- i)
- ii) 다만,

상표권 및 저작권과의 관계

(1) 상표권과의 관계

(2) 저작권과의 관계

1.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01조)

- (1) 의의 및 취지
- (2) 성립요건
- (3) 내용
- (4) 도입 배경
 - 1)
 - 2)

2.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0조)

- (1) 의의 및 취지
- (2) 성립요건

실시권의 종류

-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제97조), 통상실시권(제99조)
- (2) 통상실시권의 종류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 (3) 법정실시권 종류
 - 1) 직무디자인에 의한 통상실시권(발명진흥법 제10조)
 - 2) 등록료 추가납부 등에 따른 통상실시권(제84조 제5항)
 -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0조)
 - 4)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01조)
 - 5)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2조)
 - 6)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103조)
 - 7) 잘권 행사로 인한 디자인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제110조)
 - 8)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62조)
 - 9)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6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과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비교

- (1) 공통점
- (2) 차이점
 - i) (선출원 존재)
 - ii) (판단 시점)
 - iii) (거절 사유)



jiin DESIGN LAW

심판 및 소송

CHAPTER

08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1) 주체적 요건
- 2) 객체적 요건
- 3) 시기적 요건 - (제119조), (제17조), (제19조)

3. 절차

(제127조 제1항), (제127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제2항)

4. 심리

- 1) 방식 심리 - (제128조 제1항 내지 제3항)
- 2) 적법성 심리 - (제129조)
- 3) 본안 심리
 - ① 심리 주체(제133조)
 - ② 심리 방식(제142조)
 - ③ 심리 범위 -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5. 종료

- 1) 취하 - (제149조)
- 2) 심결 -
- 3) 불복 - (제166조)

6. 효과

- 1) 인용심결의 효과 -
- 2) 기각심결의 효과 -
- 3) 심판청구의 효과 - (제49조 제3항)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1) 주체적 요건 - (제121조 제1항)
- 2) 객체적 요건 -
- 3) 시기적 요건 - (제121조 제2항)

3. 절차

(제126조 제1항), (제126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제2항)

4. 심리

- 1) 방식 심리 - (제128조 제1항 내지 제3항)
- 2) 적법성 심리 - (제129조)
- 3) 본안 심리
 - ① 심리 주체(제133조)
 - ② 심리 방식(제142조)
 - ③ 심리 범위 -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5. 종료

- 1) 취하 - 제149조)
- 2) 심결 -
- 3) 불복 - (166조)

6. 효과

- 1) 인용심결의 효과 - (제121조 제3항)
- 2) 기각심결의 효과 - (제151조)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 1) 주체적 요건 (判例)
- 2) 객체적 요건
- 3) 시기적 요건 (判例)

3. 절차

(제126조 제1항), (제126조 제2항), 제126조 제3항), (제134조 제1항, 제2항)

4. 심리

- 1) 방식 심리 - (제128조 제1항 내지 제3항)
- 2) 적법성 심리 - (제129조)
- 3) 본안 심리
 - ① 심리 주체(제133조)
 - ② 심리 방식(제142조)
 - ③ 심리 범위 -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5. 종료

- 1) 취하 - (제149조)
- 2) 심결 -
- 3) 불복 - 제166조)

6. 효과

- 1) 인용심결의 효과 - (제151조)
- 2) 기각심결의 효과 - (제151조)

심판-조정 연계제도

(1) 의의 및 취지 (제152조의2)

(2) 도입 배경

- i)
- ii)

(3) 내용

- ① (심판사건 회부) (제152조의2 제1항)
- ② (심판기록 송부) (제152조의2 제2항 및 제207조 제1항 제1의2호)
- ③ (조정 결과) (제152조의2 제3항)

〈확인의 이익〉 - 등록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 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 ii)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 iii) 한편,

적시제출주의

(1) 의의 및 취지 (제146조의2)

(2) 도입 배경

- i)
- ii)

(3) 내용

- ①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 제146조)
- ② (제출기간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147조)
- ③ (실기한 주장 및 증거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149조)



jiin DESIGN LAW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CHAPTER

09

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1) 의의 및 취지
- (2)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점
 - 1) 출원절차의 간이화
 - 2) 비용절감 효과
 - 3)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불요구
 - 4)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화
 - 5) 권리관리의 일원화
 - 6) 유의점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1)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제173조)
- (2) 국제출원 할 수 있는 자(제174조)
 - ①
 - ②
- (3) 국제출원의 절차(제175조)
 - ①
 - ②
 - ③
- (4) 기재사항의 확인 등(제177조)
 - ①
 - ②
 - ③
- (5)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 공개
 - ① (국제출원일)
 - ② (국제등록일)
 - ③ (국제등록공개일)
- (6) 그 밖의 절차
 - ①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제176조)
 - ② 송달료의 납부(제178조)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179조 내지 제205조)

헤이그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내에서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 출원 및 심사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충돌되는 규정에 관하여는 특례를 두고 있다.